

#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

##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

**제 목**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

**관계기관** 호수초등학교

**내 용**

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의2(회의소집) 및 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, 「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」, 「호수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」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,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.

또한,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을 때에는 회의록에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하고,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하며 학교운영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이송, 학교장은 심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그런데 호수초등학교는 금번 학교 종합감사 대상기간 동안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,

(1)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회의 개최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[표]의 연번 1~3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회의 개최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,

(2)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[표]의 연번 4~5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개최 1일 전, 개최 6일 전에 각 위원에게 알린 사실이

있으며,

(3)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1건(2020학년도 4건, 2021학년도 6건, 2022학년도 1건)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,

(4) 학교운영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1건(2020학년도 4건, 2021학년도 6건, 2022학년도 1건)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**[표]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홍보 미실시 및 개최 7일전 통보 미준수 현황**

연번	회기	통보일	개최일	지적사항	비고
1	2020학년도 제4회	2020.07.10.	2020.07.23.	회의 개최 전 홈페이지 미공개	
2	2020학년도 제8회	2021.02.26.	2021.03.04.		
3	2021학년도 제6회	2022.02.11.	2022.02.22.		
4	2020학년도 제6회	2021.01.25.	2021.01.26.	회의 개최 1일전 통보	
5	2021학년도 제5회	2021.12.16.	2021.12.22.	회의 개최 6일전 통보	

**【조치할 사항】**

- ① 호수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관련자 2명에게 ‘주의’ 처분합니다.

#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

##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

**제 목** 불용물품 폐기 절차 부적정

**관계기관** 호수초등학교

**내 용**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,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」 등에 따르면, 학교장은 ‘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’에 대하여 불용을 결정할 때, 불용결정기준 부합 여부, 물품의 내용연수 경과 여부,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하여 불용결정조서에 수리비용과 수리한계금액의 비교, 사용 빈도 및 관리상태, 고장 발생 빈도 등 불용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그런데도 호수초등학교에서는 금번 종합감사 대상 기간 중 아래 [표]와 같이 텔레비전 총 18대(취득금액 금38,040,000원)에 대하여 불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, 불용결정조서에 검토사항(수리비용과 수리한계금액의 비교, 사용빈도 및 관리상태, 고장 발생빈도 등)에 대한 검토 및 작성을 하지 않고, 또한 매각절차 없이 폐기 처리 한 사실이 있다.

[표] 호수초등학교 불용물품 부적정 처리 현황

[단위: 천원 / 대]

구분	불용물품내용								처리수량		
	학년도	물품명	단가	수량	금액	취득일	내용연수	불용결정일	불용사유	폐기	처리기관
	2021	텔레비전	2,180	12	26,160	2009.09.29.	5	2021.01.19.	불용사유 발생(조례 16조)	12	○○○○
	2021	텔레비전	1,980	6	11,880	2008.08.26.	5	2021.01.19.		6	

※ 관련자료는 호수초등학교 감사 수감자료에 근거함.

## **【조치할 사항】**

- ① 호수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관련자에게 ‘주의’ 처분합니다.

#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

##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

**제 목**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 처리 부적정

**관계기관** 호수초등학교

**내 용**

### 1. 학교회계 예산편성 업무 처리 부적정
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3(학교회계의 운영)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그런데 호수초등학교에서는 금번 학교종합감사 대상기간 중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래 [표]와 같이 2021학년도 본예산(안) 심의자료를 2021. 2. 15.에, 2022학년도 본예산(안) 심의자료를 2022. 2. 11.에 각각 학교운영위원회로 제출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제출기간 30일을 확보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.

[표] 호수초등학교 학교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 제출 기한 미준수 내역

구분	제출기한	제출일	도과일수	비고
2021학년도 본예산	2021.1.29.	2021.2.15.	17일	
2022학년도 본예산	2022.1.29.	2021.2.11.	13일	

### 2. 세출예산과목 혼용 집행

「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」 제11조(예산안의 편성)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고, 예산을 편성할 경우 예산은 예산 과목 체계 및 과목해설에 따른 세입·세출예산과 목

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, 같은 규칙 제16조(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)에 따르면 학교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.

그런데 호수초등학교에서는 금번 학교종합감사 대상기간 중 세출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출예산 과목 구분 시 일반수용비, 비품구입비, 교육운영비, 강사비 등의 지출내역 총 95건, 금49,246,470원을 과목 성격과 다르게 운영수당, 인건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한 사실이 있다.

### **【조치할 사항】**

- ① 호수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관련자에게 ‘주의’ 처분합니다.